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04-01



대외협력 연구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 지재권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

A Study on FTA Negotiation Strategy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19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대외협력 연구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 지재산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
- 기체결 FTA 협정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 Study on FTA Negotiation Strategy

2019.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중, “대외협력 연구 -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 지재권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 구 책 임 자 : 이현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외 부 연 구 원 : 이흥기(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전 세계 교역이 확대되고,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이 확대
 -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발효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최근 FTA 관련 성과로는 중미 6개국을 포함하는 한-중미 FTA를 타결과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타결
 - 2019년 11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FTA 체결,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 FTA가 발효
 - 한-중미, 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가 서명 및 타결됨. 그리고 한-중-일, 에콰도르, MERCOSUR, 필리핀 및 러시아와 협상 중이며, 멕시코, GCC 및 EAEU와는 협상재개·개시 및 연건이 조성

- (연구목적)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상방안 마련을 위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협상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FTA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은 체결 대상국의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개별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
 - 현재 발효된 FTA를 위주로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

제2장 한-미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된 협정이며,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제18장에 의해 규율
 - 제18장은 총칙, 실체규정, 집행규정, 경과규정 및 부속서한으로 구분
 - 세부 실체규정으로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인터넷상 도메인 이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특허, 특정 규제 제품과 관련된 조치가 마련

- 특허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는 특허보호대상의 확대, 공지에외기간 연장, 의약품 관련 자료보호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등
 - 특허보호대상 관련 용도발명을 명확히 하고, 공지에외기간을 6월→12월, 의약품 자료보호기간을 규정(의약 5년, 농약 10년)하고,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 상표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는 소리 및 냄새 상표의 보호,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유명 상표의 보호범위 확대, 지리적 표시의 보호규정 마련 등
 - 보호대상에 있어 소리 및 냄새 상표의 보호를 통해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리적 표시증명표장까지 보호 확대, 유명 상표에 관해 규정하게 되었으며,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 마련

- 저작권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는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복제의 포함,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정부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등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일시적 복제를 복제에 포섭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대해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국내 저작권법에 반영,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를 새롭게 추가하여 규정함

- 집행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는 법정손해배상을 규정, 정보제공명령의 도입, 비밀유지명령의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및 잠정조치, 직권조치, 범죄수익몰수, 영화도촬금지 규정 등, OSP 책임 면제에 대한 규정 마련

제3장 한-EU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 한-EU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은 제10장에 총 3개의 절로 구성
 - 제1절은 일반규정으로서, 목적(제10.1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제10.2조), 기술이전(제10.3조) 및 권리소진(제10.4)을 규정
 - 제2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준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및 그 밖에 관한 6개의 관(sub-section)으로 구성
 - 제3절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밖의 규정의 4개의 관으로 구성

- 저작권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보호기간, 방송사업자 권리, 재판매권,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이 존재
 -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50년→70년)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상영의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고, 권리자 추정, 인접권 추정 규정도 포함
 - 재판권에 대해 규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대해 규정

- 특허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의약품 및 농약품의 존속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를 들 수 있으며, 상표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강력한 보호규정 등
 - 특히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해 별도의 부속서 마련, 선행 상표와의 관계, 지리적 표시의 추가를 위한 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등록 및 미등록 외관에 대한 보호를, 유전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이들의 보호를 규정
 - 디자인에 있어 미등록 외관에 대해서도 이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
 - 집행 분야에 있어서 민형사 책임 및 OSP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

제4장 한-중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 한-중 FTA는 제15장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마련

- 일반규정(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제2절), 상표(제3절), 특허 및 실용신안(제4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제5절), 식물품종 보호(제6절), 미공개 정보(제7절), 산업디자인(제8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제9절), 지식재산권의 집행(제10절) 및 그 밖의 규정(제11절)의 총 11개의 절로 구성

□ 저작권 분야에서는 배타적 복제권, 방송신호의 보호, 보상금청구권,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을 규정

□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주요 이슈로는 특허대상의 제외, 우선심사제도, 실용신안제도 남용 방지 등의 이슈가 있음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중국의 제도를 감안하여 법원이 실용신안 권리자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상표 분야 주요 이슈로는 소리 상표의 보호, 상표권자의 권리강화 및 출원절차의 개선 등의 이슈가 있음

- 소리 상표의 보호를 규정했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명 상표의 보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유전자원 및 식물신품종에 대해서도 규정하며,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손해배상규정을 구체화하고, 압류 및 폐기, 잠정조치 및 통관보류, 영화도촬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으며, 인터넷상의 반복침해에 대해서도 규정

제5장 기타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 협력증진을 위주로 하는 FTA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로 구분 가능
 - 협력증진을 위주로 규정한 FTA로는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PPA가 있음.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FTA로는 한-칠레 FTA, 한-E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등

제6장 결론

- 우리나라는 많은 FTA를 체결해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과 새로운 FTA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체결 FTA에 대해서는 재협상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FTA는 한-미 FTA 및 한-EU FTA를 계기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한 높은 수준의 규범체계를 가짐
- FTA를 통해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국에 유리한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예상
 - 미국은 저작권 등 디지털 분야와 의약품 분야에 대해 강조하며, EU는 지리적 표시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상에서 공격적 자세 견지 예정
-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상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Contents

제1장 | 들어가며

제2장 | 한-미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7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14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20
제4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24

제3장 | 한-EU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37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41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43
제4절 지리적 표시 분야 주요 이슈	44
제5절 디자인 분야 주요 이슈	48
제6절 유전자원 분야 주요 이슈	49
제7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50

제4장 | 한-중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59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주요 이슈	63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65
제4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68
제5절 식물신품종 보호	69
제6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70

제5장 | 기타 FTA

제1절 협력증진 등 일반규정 위주의 FTA	79
I. 한-싱가포르 FTA	79
II. 한-ASEAN FTA	81
III. 한-인도 CEPA	81
제2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FTA	82
I. 한-칠레 FTA	82
II. 한-E FTA FTA	84
III. 한-페루 FTA	87
IV. 한-터키 FTA	91
V. 한-호주 FTA	93
VI. 한-캐나다 FTA	102
VII. 한-뉴질랜드 FTA	109
VIII. 한-베트남 FTA	112
IX. 한-콜롬비아 FTA	120

제6장 | 마치며



Korea



Institut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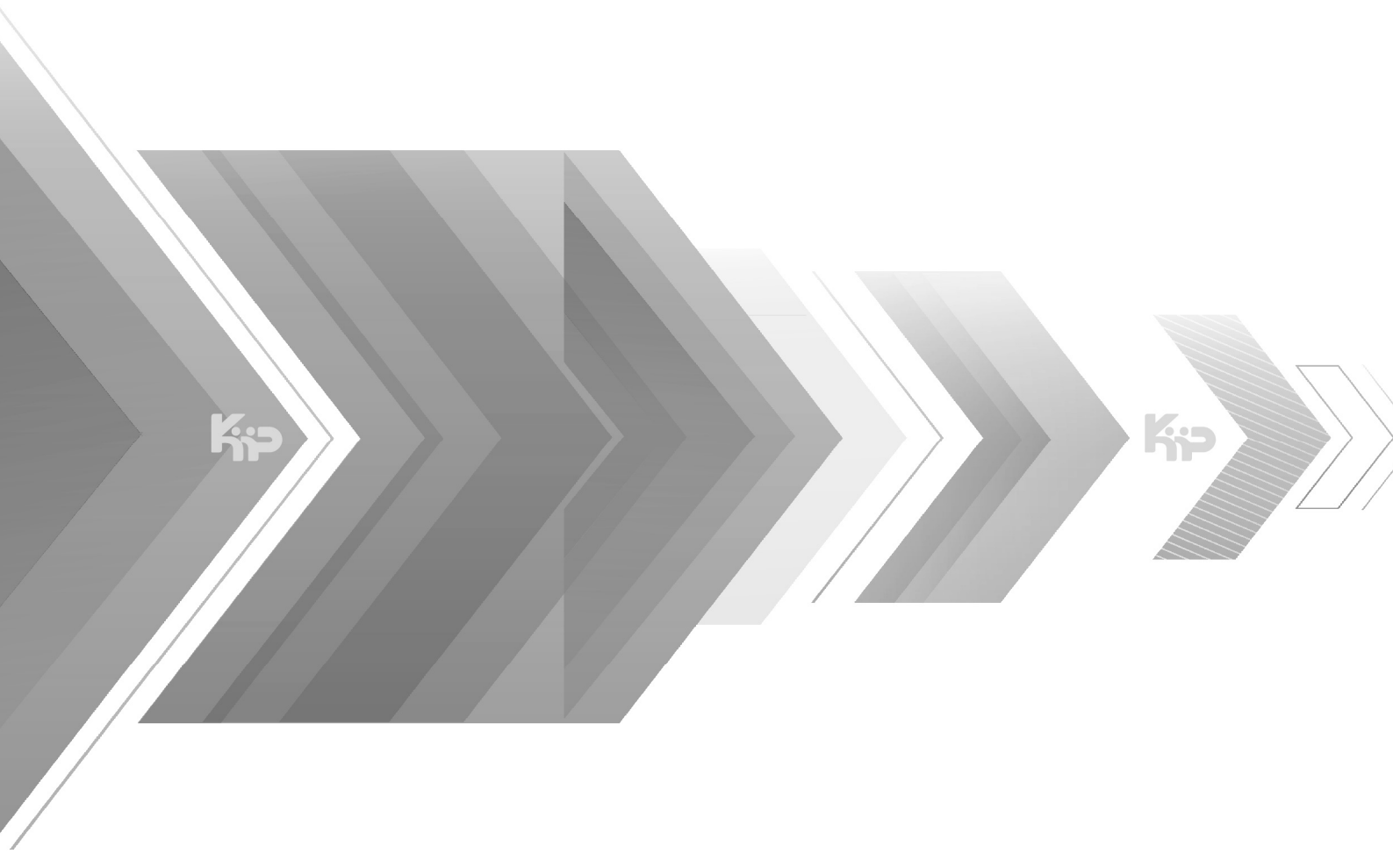
Intellectual



Property
viii



제1장 들어가며



전 세계 교역이 확대되면서 시장개방효과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3년 이후 수출경쟁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FTA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발효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FTA 관련 성과로는 중미 6개국을 포함하는 한-중-미 FTA 타결과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이 타결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와 최초로 FTA를 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FTA의 협상 및 체결을 확대해왔으며, 2019년 11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¹⁾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 FTA가 발효되었다. 한편 한-중미, 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가 서명 및 타결되었다. 그리고 한-중-일, 에콰도르, MERCOSUR, 필리핀 및 러시아와 협상 중이며, 멕시코, GCC 및 EAEU와는 협상재개·개시 및 연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FTA는 양국 간 협상이 아닌 다자간, MEGA FTA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협상은 더욱 복잡하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상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협상에서의 전략을 확고히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협상전략의 수립 및 협상참석을 통한 협상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협상전략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협상방안 마련을 위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협상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FTA에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은²⁾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 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 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 제공과 무역 투자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다만 FTA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은 체결 대상국의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개별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현재 발효된 FTA를 위주로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기로 한다.³⁾

1) 인도와는 FTA가 아닌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바,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된다.

2) 한편 체결 시기에 따라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이 아닌 '지적재산' 또는 '지적재산권'의 표기를 택하고 있는 FTA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3) 다만 본 보고서는 2019년 본 과제를 통한 연구 중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주요조문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제2장 한-미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KIP

KIP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규정된 협정이다. 본 협정에서는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제18장에 의해 규율된다. 제18장은 총칙(제18.1조), 실체규정(제18.2조~제18.9조), 집행규정(제18.10조), 경과규정(제18.11조) 및 부속서한(Confirmation Letter 1~4)으로 구분된다. 또한, 세부의 실체규정으로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제18.2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제18.3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제18.4조), 저작권(제18.5조), 저작인접권(제18.6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제18.7조), 특허(제18.8조), 특정 규제 제품과 관련된 조치(제18.9조)가 마련되었다. 이에 한-미 FTA의 주요 조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I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종래 생존기간을 포함하여 사후 50년 또는 발행·창작에서부터 50년간의 보호를 70년으로 규정하였다(제18.4조 제4항).⁴⁾ 본 협정문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제18.4조

4. 각 당사국은 저작물(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⁴⁾ 이러한 보호기간 연장 의무는 협정 발효로부터 2년간 유예되었다. 다만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EU FTA 및 한-페루 FTA의 선 발효로 인해 저작권은 2013년 7월 1일, 저작인접권(음반 및 실연)은 2013년 8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연장 적용되었다. 음반 및 실연의 경우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시 반영되므로, 기 발효된 한-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1조)되었다.

II // 주요 지식재산 활용전략

복제의 범주에 영구적 복제뿐 아니라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제18.4조 제1항 등).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의 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일시적 복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자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18.4조 제1항 각주 11등).

한-미 FTA 제18.4조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주 11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공정이용을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는 이전 문장에서 기술된 대로 한정되어야 한다.

III //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및 회피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상의 구제절차를 제공하였다. 이에 ①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한 없이 우회하는 인(제18.4조 제7항 가목 1호), ②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협력하여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마케팅 하는 것과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및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장치·제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것(제18.4조 제7항 가목 2호)을 금지하였다.

한-미 FTA 제18.4조

7. 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8.10조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 1)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한 없이 우회하는 인, 또는
- 2) 다음의 장치·제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의,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하거나 제공하는 인
 -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협력하여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마케팅하는 것
 -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대로 제18.10조제2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전자·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각 당사국은 이 항을 이행하는 조치의 위반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독립적인 별개의 소송 원인임을 규정한다.

라.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로 한정하되, 이는 마호에 따라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

-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또는 현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하였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하여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훔걸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필요한 한 도에서 수행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 3)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 하에서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것
- 4)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에 의하여 허락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 5)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

하는 개인 식별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 6)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
- 7) 취득 여부의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 8)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성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있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 다만, 이 목적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외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갱신가능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마.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은 라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만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와 제한이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정성 또는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 1) 가호1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라호에 규정된 각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2)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 라호1목·2목·3목·4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3)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라호 1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효과적인 기술조치라 함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보호되는 대상물체의 접근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통상적인 작동과정에서 보호하는 기술·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다만 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획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선의의 비침해적 리버스 엔지니어링, ②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흡결·취약성 확인 및 분석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필요한 한도 내의 선의의 비침해 행위, ③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물 접근차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행위, ④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포함된 컴퓨터의 상태를 점검, 조사 및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 소유자가 허락한 비침해 행위, 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수집·유포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⑥ 법집행 정보활동 필수적 안보 등 정부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공무원 등의 합법적 행위 및 ⑦ 비영리도서관의 기록보존소 등 교육기관이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행위의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다(제18.4항 제7항 라목).

IV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등으로서, 보호 대상 범위를 모든 형태의 권리관리 정보로 확대하게 되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뿐 아니라 비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도 포함되었다(제18.4조 제8항).

이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가능·쉽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①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②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해당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 및 ③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였다(제18.4조 제8항). 다만,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 권리관리정보의 침해에서 면책하였다(제18.4조 제8항 나목).

한-미 FTA 제18.4조

8.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가능·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은 제18.10조제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 1)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 2)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 3)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또는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이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대로 제18.10조 제27항의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로 한정한다.

다.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다.

-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 3)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V //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등

중앙정부 기관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정부지침, 행정령 및 제공령의 도입을 규정하였다(제18.4조 제9항).

한-미 FTA 제18.4조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VI // 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위성·케이블 신호를 불법으로 해독하는 기기 등을 이용한 무단 시청 또는 청취 및 재배포 행위와 관련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형사구제절차를 규정하였다. 이에 ① 암호화된 위성·케이블 신호를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기기·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출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②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신호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성·케이블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 및 재배포하는 행위 및 ③ 적법하게 해독된 위성·케이블 신호를 배포자의 허락범위를 넘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재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규정하였다(제18.7조).

한-미 FTA 제18.7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형사 범죄로 한다.

-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 나.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18)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I 특허일반

1. 특허대상의 제외

특정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피해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및 ②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수술방법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8.8조 제2항). 특허 본 조에서는 아래 두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특허대상을 제외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미 FTA 제18.8조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2. 특허취소 사유의 한정

특허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특허허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서만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실시요건에 따른 특허취소제도는 폐지되었다(제18.8조 제4항).

한-미 FTA 제18.8조

- 4. 각 당사국은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당사국이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공지 예외 적용기간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및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지 예외의 적용을 규정하였다(제18.8조 제7항). 이에 따라 공지 예외의 사유 및 기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미 FTA 제18.8조

7.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II 의약품 특허 관련

1.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 목적의 특허신청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을 위하여 특허권이 있는 의약품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생산된 시약은 시판허가 신청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제조·사용 또는 판매 및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18.8조 제5항).

한-미 FTA 제18.8조

5. 제3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허가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2.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특허 당국의 특허심사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해 불합리한 지연 기간만큼 특허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8.8조 제6항 가목).

한-미 FTA 제18.8조

6. 가. 각 당사국은 특허를 허용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 존속기간을 조정한다. 이 호의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특허 설정등록의 지연을 최소한 포함한다. 특허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기간은 그러한 지연의 결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한편 신약 시판허가에 필요한 절차 소요에 따라 특허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해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8.8조 제6항 나목).

한-미 FTA 제18.8조

6.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 및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이 허가된 신규 의약품의 제조 또는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신규 의약품의 최초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시판허가 절차의 결과로 유효한 특허 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신규 의약품, 그것의 허가된 사용방법 또는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의 특허 존속기간 또는 특허권의 기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호에 따른 모든 조정은, 동일한 제한과 예외에 따라, 원래 설정 등록된 특허에서의 제품·사용방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배타적인 권리를 적용 가능한 대로 그 제품과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에 부여한다.

3. 의약품 자료독점

의약품의 신규 시판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자료에 대하여,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동 자료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최초 개발자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 농약품에 대해서는 최소 10년간 금지하였다(제18.9조 제1항). 한편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임상정보의 추가적 제출에서는 최소 3년간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였다(제18.9조 제2항).

한-미 FTA 제18.9조

1. 가.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 2) 그 시판허가의 증거

나.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신규 제품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 2)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다. 이 조의 목적상, 신규 의약품은 의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규 농약품은 농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이다.

2. 가. 당사국이 다른 의약품의 시판을 위하여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이전에 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허가에 필수적인 새로운 임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정보, 또는
- 2)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그 시판허가의 증거

나.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의 증거 이외에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의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임상정보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정보, 또는
- 2) 그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다.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그 용도를 위하여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농약품의 원래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 2) 그 용도를 위한 시판허가의 증거

라.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이전의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래의 시판허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다른 영역에서 그 용도에 대한 이전 시판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 2)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

4. WTO 공중보건선언 재확인

당사국은 WTO 공중보건선언의 의무를 확인하고 한-미 FTA가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의 개정에 대해서도 신속히 협의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8.9조 제3항).

한-미 FTA 제18.9조

3. 의약품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WT/MIN(01)/DEC/2) (선언)
 - 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 의하여 부여되었으며 양 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조항에 대한 모든 면제, 그리고
 - 다. 양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게 되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개정

5. 허가-특허 연계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복제 의약품 생산업자가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① 특허기간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자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며, ② 특허기간에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는 후발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8.9조 제5항). 이에 따라 약사법에 허가-특허 연계를 위한 규정들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시행 중이다.

한-미 FTA 제18.9조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 가.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허가를 요청하는 모든 그러한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 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I // 소리-냄새 상표의 도입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만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리 또는 냄새로만 구성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확대되었다(제18.2조 제1항). 이에 따라 비전형 상표인 소리 및 냄새 상표를 보호하게 되었다.

한-미 FTA 제18.2조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II //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를 표장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제18.2조 제2항). 이에 따라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추가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도 도입되었다.

한-미 FTA 제18.2조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

각주5: 이 장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어떠한 표지(예: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시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장에서 “원산지”는 제1.4조(정의)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III // 상표등록권자의 권리

상표등록권자는 제3자가 등록 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유사·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표지 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며,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등록 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같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때에도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8.2조 제4항).

한-미 FTA 제18.2조

4.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V // 유명 상표 보호

유명 표장의 판단 요건에 있어 등록, 유명 표장목록에의 등재 및 사전인식을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제18.2조 제6항).

한-미 FTA 제18.2조

6.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추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 가. 등록
 -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한편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유명 상표권자와 연관성을 나타내고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동 유명 상표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거절, 취소 및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였다(제18.2조 제7항 및 제8항). 이때 유명 상표의 결정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일반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요구될 수 없다(제18.2조 제7항 각주6).

한-미 FTA 제18.2조

7.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수 없다.

V // 상표 전용 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상표사용권의 효력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 주장을 위한 요건으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제18.2조 제13항). 이에 종래 우리 상표법은 등록을 전용사용권의 효력 발생요건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FTA에 따라 전용 사용권의 등록과 무관히 사용권자의 침해구제가 가능해졌다.

한-미 FTA 제18.2조

13.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확립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사용권을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VI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지리적 표시의 출원, 청원절차와 관련한 당사자국의 의무가 구체화되었다. 이에 협정 당사국의 관여 없이 당사국 국민이 직접 출원 및 청원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출원·청원의 형식적 요건이 최소화되고, 절차규정의 공개 및 명확화, 출원·청원절차 및 처리 과정의 공개와 출원·청원에 대한 공표, 이의제기 및 등록취소의 절차가 마련되었다(제18.2조 제14항). 또한, 지리적 표시가 등록 상표, 사용으로 권리를 획득한 상표 및 유명 상표 등의 선행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의 거절 및 취소와 이의제기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제18.2조 제15항).

한-미 FTA 제18.2조

14. 당사국이 상표보호제도를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출원하거나 이의 인정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출원 및 청원(당사국이 선택한 수단과 관련되는 경우에 대하여,

가. 자국민을 대신한 당사국의 관여를 요구함이 없이,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을 접수한다.

나.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을 최소한의 형식으로 처리한다.

다.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출원 및 청원의 제출 절차와 출원 및 청원의 처리과정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청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 및 청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절차적인 지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락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마. 지리적 표시를 위한 출원 및 청원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하고, 출원 또는 청원의 대상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생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15. 가. 각 당사국은 다음의 각 사항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의 거절, 그리고 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가 되도록 규정한다.

1)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 중이며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지리적 표시가, 선의의 사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3)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가호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은 다음이 된다.

1)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출원 또는 청원일, 그리고

2)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인정일

제4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I 법정손해배상

저작권, 저작권접권 또는 상표 등의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해야 한다(제18.10조 제6항).

한-미 FTA 제18.10조

6.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 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한편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7항).

한-미 FTA 제18.10조

7.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 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당국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II // 정보제공 명령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소유·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권리자 또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정하였다. 제출 대상 정보로는 제3자를 포함한 침해연루자, 침해 관련상품·서비스의 생산수단 및 유통 경로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다(제18.10조 제10항).

한-미 FTA 제18.10조

10.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III // 유효한 명령 불복

민사절차에 있어 법원의 유효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구류 또는 구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11항 가목).

한-미 FTA 제18.10조

11.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가. 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당사자를 구류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IV // 비밀유지 명령

재판과정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에 대해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제18.10조 제11항 나목).

한-미 FTA 제18.10조

11.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V // 대체적 분쟁해결

법적 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16항). 다만, 본 조항은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미 FTA 제18.10조

16.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VI // 잠정조치

잠정조치 요청에 당사국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관련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다. 아울러 침해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남용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다(제18.10조 제17항 및 제18항).

한-미 FTA 제18.10조

17.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8.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VII // 직권 국경조치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 및 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19항부터 제25항).

한-미 FTA 제18.10조

1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

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 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거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예치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1.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압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탁송인·수입자·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다.
22.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24.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5.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한다.

VIII // 역담보 허용 금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는 역담보를 통한 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 26항).

한-미 FTA 제18.10조

26.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익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 그리고
- 나.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

IX // 범죄수익의 몰수 및 비친고죄의 적용

사법당국에 대하여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8.10조 제27항). 뿐만 아니라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27항).

한-미 FTA 제18.10조

27. 제26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 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라.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한다.
 -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와 다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 마.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 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 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X // 악의적 밀거래의 금지

위조·불법 라벨 또는 위조 포장·서류를 알면서 밀거래한 경우 고의적인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지라도 형사 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28항).

한-미 FTA 제18.10조

28. 각 당사국은, 또한 최소한 다음에 대하여 알면서 행한 밀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 가.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문학 저작물의 복제물,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나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벨, 그리고
 - 나.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품목에 대한 위조 서류 또는 포장

XI // 도촬 금지

영화관 등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전송 또는 복제하기 위해 촬영하는 행위 및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 형사 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29항).

한-미 FTA 제18.10조

29.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 절차를 또한 규정한다.

XII // OSP의 면책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면서 일정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OSP의 침해 기여도가 유형별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①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단순도관, ② 자동적인 처리를 통한 캐싱서비스, ③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및 ④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차등화된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5) 저작권자가 OSP로부터 침해 혐의자의 신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제18.10조 제30항).

5) 한편 한-EU FTA는 OSP의 유형을 ① 단순도관, ② 캐싱 및 ③ 호스팅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미 FTA 제18.10조

30.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지하는 형사 및 민사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 나. 이 호에서 규정된 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 1) 이러한 책임제한은 금전적 구제를 배제하며, 다음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를 강제 또는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다음의 기능에 한정된다.
 - 가)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
 - 나)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 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의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그리고
 - 라)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 2) 이러한 책임제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의 전송 체인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그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다만, 1목라에 기술된 기능이 그 자체로서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1목가 내지 1목라의 각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4목 내지 7목에 규정된 자격 조건에 따라, 각 다른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과는 별도로 고려된다.
 - 4) 1목나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서비스 제공자가, 캐싱된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만 상당 부분 캐싱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 나)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 자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인이 자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표준 정보통신규약에 따라 명시한 때에, 캐싱된 자료의 새로고침, 리로딩 또는 그 밖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 사이트에서 사용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산업 표준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사용자에게 전송 시 수정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라)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원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 5) 1목다 및 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 나)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9목에 따른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통해서와 같이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그리고

- 다)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하는 대표자를 공개적으로 지정할 것
- 6)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상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그리고
- 나)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보호하고 확인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컨센서에 의하여 개발되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택된 표준 기술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7)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은, 그러한 기술 조치와 합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 8) 서비스 제공자가 1목가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 명령은 특정한 계정을 해지시키거나 특정한 국외 온라인상의 장소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1목의 그 밖의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은, 침해 자료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로 제한된다.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과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구제의 실효성, 그리고 부담이 보다 적고 비슷하게 효과적인 집행 방법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증거 보전을 보장하는 명령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에 중요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그 밖의 명령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 호에 언급된 법원 명령절차의 통보를 받고 사법당국에 출두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그러한 구제가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 9) 1목다 및 1목라에 언급된 기능에 대한 통보와 중단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의 효과적인 통보를 위하여, 그리고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자신의 자료가 제거되거나 무력화된 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위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통보 또는 대응통보에서 알면서 중요한 허위 표기를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그 허위 표기에 의존한 결과로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인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규정한다.
- 10)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주장 또는 의견상 명백한 침해에 기초하여 선의로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자료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자료를 이용 가능하게 한 인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인이 효과적인 대응통보를 하고 침해소송에서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유효한 일차 통보를 한 인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법적 구제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온라인상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1)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
- 12) 1목가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시키는 제공자를 말하고, 1목나 내지 1목라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장 한-EU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지리적 표시 분야 주요 이슈

제5절 디자인 분야 주요 이슈

제6절 유전자원 분야 주요 이슈

제7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한-EU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분은 제10장에 총 3개의 절로 구성된다. 이 중 제1절은 일반규정으로서, 목적(제10.1조), 의무의 성격 및 범위(제10.2조), 기술이전(제10.3조) 및 권리소진(제10.4)을 규정하며, 제2절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준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특허 및 그 밖에 관한 6개의 관(sub-section)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제3절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민사구제, 형사집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그 밖의 규정의 4개의 관으로 구성된다.

》》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I // 저작권 보호기간

종래 50년이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이행은 협정발효 후 2년간 유예하였다(제10.6조 및 제10.14조).⁶⁾

한-EU FTA 제10.6조 저작자 권리의 존속기간

각 당사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 10.14조 경과규정

대한민국은 제10.6조 및 제10.7조의 의무를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완전하게 이행한다.

⁶⁾ 한편 한-미 FTA는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발행 또는 창작시점 기준)의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II //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 상영하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제10.9조 제5항).⁷⁾ 또한, 권리자 추정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제10.53조), 민사소송에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방송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접권자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⁸⁾

III // 재판매권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재판매권 도입의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제10.10조).

한-EU FTA 제10.10조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양 당사자는 예술가의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7) 이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기관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1961)에서도 부여하고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8일에 동 협약을 가입(2009.3.18.일 발효).

8) 한편 한-미 FTA에서는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대한 권리자 추정 규정은 있으나, 방송물에 대한 권리자 추정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IV //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 행위가 금지되었다(제10.12조). 이에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제10.12조 제2항).

한-EU FTA 제10.12조 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령과 제10.5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행위에 대해서는 침해를 부정하였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유를 국내법 및 국제규범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⁹⁾

⁹⁾ 한-EU FTA에 비하여 한-미 FTA에서는 예외 및 제한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였다.

V 권리관리정보

권리관리정보에 대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거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제 10.13조). 이에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보호가 규정되었다(제10.13조 제1항).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제10.13조 제1항).

한-EU FTA 제10.13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한다.
 -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나.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제2절

특허 분야 주요 이슈

I // 의약품 특허의 연장

의약품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의약품의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한-미 FTA와 동일한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연장된다(제10.35조).

한-EU FTA 제10.35조 특허보호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1.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에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품은 자신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적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최소허가의 결과로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한다.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II // 의약품 및 농약 등의 자료보호

신약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TRIPs 협정 제39조를 충족시키는 경우,¹⁰⁾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36조). 또한, 농약 등 식물 보호 제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해 최초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도, 최초 판매허가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37조).

한-EU FTA 제10.36조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제출되는 자료의 보호

1. 양 당사자는 의약품 시판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의 비밀성, 비공개 및 비원용을 보장한다.
2. 그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언급된 대로,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시판허가 보유자가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의약품의 또 다른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각자의 법령에 보장한다.
3. 자료보호기간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된 최초 시판허가일로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5년이어야 할 것이다.

¹⁰⁾ TRIPs 협정 제39조(미공개정보의 보호)는 제3항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에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것(origination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을 요구한다.

▶▶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상표 등록거절 이유의 서면통지, 등록거절에 대한 이의제기와 사법적 불복청구 기회 부여 및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였다(제10.15조). 다만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예외를 인정하였다(제10.17조).

한-EU FTA 제10.15조 등록절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또한 이해 당사자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제10.17조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각 당사자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을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로서 규정하며, 그 밖의 제한적인 예외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절

지리적 표시 분야 주요 이슈

I 지리적 표시의 보호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64개, EU: 162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범위는 농산물 및 식품, 포도주, 방향 포도주 및 증류주로 한정하였다.¹¹⁾

II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

부속서에 기재된 양국의 지리적 표시는 ①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② 진정한 산지가 표시되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및 ③ 파리협약 제10조의 2 의미 내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된다(제10.21조 제1항).¹²⁾

한-EU FTA 제10.21조 보호의 범위

1.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된다.

-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 나.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

11) 이에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복분자 등(한국) 및 보르도, 부르그뉴, 샴페인, 꼬냑, 스키치위스키,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등(EU)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12) 파리협약 제10조의 2(불공정경쟁)는 산업 및 상업상 정직한 관행에 어긋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불공정경쟁행위로 정의, 불공정경쟁에 대하여 회원국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한다(특히,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허위주장,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

지 아니하는 유사상품)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제10.17조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각 당사자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을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로서 규정하며, 그 밖의 제한적인 예외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 상표와의 관계

한-EU FTA 발효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로서, 사용에 의해 확립된 선행 상표의 사용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상관없이 보장된다(제10.21조 제5항). 이에 협정발효 후,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상표가 유사상품에 출원될 경우, 거절 또는 무효의 대상이다(제10.23조).

한-EU FTA 제10.21조 보호의 범위

5. 이 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 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제10.23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IV 지리적 표시의 추가

협정발효 후에도 합의에 따라 한-EU FTA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 요청에 따라 부당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제10.24조).

한-EU FTA 제10.24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해 달라는 다른 쪽의 요청을 과도한 지체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3. 명칭이 포도의 품종을 포함하여, 식물의 품종 또는 동물의 종의 명칭과 충돌되고 그 결과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명칭은 지리적 표시로서 등록될 수 없다.

V // **작업반의 구성**

양측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 및 대화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 지리적 표시의 추가 및 삭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관련 정보교환 등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제10.25조).

한-EU FTA 제10.25조 지리적 표시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리적 표시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작업반은 컨센스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회의 장소는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상호결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그리고 화상회의를 포함한 방식으로 회합하나, 요청 후 90일 이내에는 회합한다.
3. 작업반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 가. 적용 가능한 경우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는 것
 - 나. 원산지 당사자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가호에 언급된 부속서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 다. 이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4. 작업반은 또한 이 관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을 담당한다.
 - 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 나. 이 협정에 따라 그 보호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
5. 작업반은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어떠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다.

▶▶ 제5절

디자인 분야 주요 이슈

등록디자인 및 미등록 외관에 대해서는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의 보호가 부여되었다.¹³⁾ 등록 디자인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품목을 제작·판매·판매를 위한 제공·수입·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무역관행에 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금지할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제10.28조).

한-EU FTA 제10.28조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아니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미등록 외관에 대해서도 이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였다(제10.29조). 다만 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이 최소 15년인데 반하여(제10.30조 제1항), 미등록 외관은 최소 3년간의 보호를 부여한다(제10.30조 제2항). 아울러 예외로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거나,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디자인 및 공공정책 또는 인정된 도덕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제10.31조).

한-EU FTA 제10.31조 예외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디자인 보호는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디자인권은 공공정책 또는 인정된 도덕 원칙에 반하는 디자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¹³⁾ 이에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등록디자인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미등록 외관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이 사회 규칙으로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을 모두 보호하는 EU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한편 한-미 FTA에는 별도의 디자인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6절

유전자원 분야 주요 이슈

자국의 법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관련된 토착 및 지역공동체의 지식·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의 공유를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제10.40조 제1항). 이에 WIPO, WTO 및 CBD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토론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다자간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제10.40조 제2항, 제3항).

한-EU FTA 제10.40조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자신의 법령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하에 더욱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관련 다자간 토론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 가. 세계지적재산기구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의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 나. 세계무역기구에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이하 “생물다양성협약”이라 한다) 간의 관계와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 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혜택공유에 관한 국제체제에 관련된 문제
3. 제2항에 언급된 관련 다자간 논의의 종결 이후,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다자간 논의의 결과 및 결론에 비추어 무역위원회에서 이 조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검토결과에 대해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 제7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I // 민사구제

사법당국이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침해자 또는 협정상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인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제10.45조).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법당국의 권한 부여의무를 규정하였다. 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임박한 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의 계속적 침해를 금지하거나 침해의심 물품을 압류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제10.46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폐기 및 상거래에서의 제거, 침해물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 명령(제10.47조),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권리침해의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제10.48조), 상기 폐기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대신하는 금전적 보상 지불명령(제10.49조), 중개자에 대한 중간금지명령 및 금지명령(제10.46조 제1항, 제10.48조 제2항)과 중개자의 서비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상표권·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경우 권리자가 동 중개자에 대해서도 중간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때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정하되, 침해물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한 자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된다(제10.46조 각주20 및 각주21).

한-EU FTA 제10.45조 정보권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 동안 그리고 원고의 정당하고 비례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침해자 및/또는 그 밖의 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증인인 인에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근원 및 유통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가. 이 항의 “그 밖의 인”이란 다음의 인을 말한다.
 - 1) 상업적 규모로 침해상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2) 상업적 규모로 침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인
 - 3) 침해활동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상업적 규모로 제공하는 것으로 발견된 인, 또는
 - 4) 상품의 생산, 제조 또는 배포나 서비스의 공급에 연루된 것으로 이 호에 언급된 인에 의하여 지목된 인
 - 나. 정보는 적절한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의도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공급자 및 그 밖의 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 2) 문제가 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획득된 정보로서, 생산, 제조, 배달, 수령 또는 주문된 양과 가격에 관한 것

2. 이 조는 다음의 그 밖의 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 가. 권리자에게 더 완전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정
 - 나. 이 조에 따라 전달된 정보를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규정
 - 다. 정보권의 오용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법규정
 - 라. 제1항에 언급된 인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강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법규정, 또는
 - 마. 정보원의 비밀성의 보호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법규정

제10.46조 잠정적 및 예방적 조치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의 임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신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침해행의 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계속이 권리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간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간금지명령은 제3자에 의하여 중개자*의 서비스가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권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중개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다.
2. 중간금지명령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상거래로 유입되거나 상거래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품의 압류를 명령하기 위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
3.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진 침해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신청인이 손해의 회복을 위협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하는 경우, 사법당국이 은행계정 및 그 밖의 자산의 동결을 포함하여 침해행의자의 동산 및 부동산의 예방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47조 시정조치

1.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상거래로부터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그러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간의 비례성의 필요가 고려된다.

제10.48조 금지명령

1.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판정하는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법당국이 침해의 계속을 금지할 목적의 금지명령을 침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준수를 보장할 목적으로, 금지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반복적 벌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각 당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권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가 그 중개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도록 또한 보장한다.

- *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 **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의 범위는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한편 사법당국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적절한 경우, 대안으로서 침해자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하였어야 할 사용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일괄지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제10.50조). 아울러 상표권 및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0.50조 제3항).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승소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적 비용 등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것을 규정하였다(제10.51조).

한-EU FTA 제10.50조 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보장한다.
 - 가. 사법당국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 나. 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당국은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양 당사자는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 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전설정 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10.51조 법적 비용

각 당사자는 승소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적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II // 형사집행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 형사절차 및 처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제10.54조). 다만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의 경우에는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 도입여부가 고려된다(제10.55조).

한-EU FTA 제10.54조 형사집행의 범위

각 당사자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10.55조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헌법 또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의 위조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수립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한다.

형사절차 및 처벌의 유형으로는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 및 도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압수(제10.58조), 징역형 또는 벌금형(제10.59조)과 위조 또는 복제상품, 관련 재료와 도구 및 그 밖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자산의 몰수(제10.60조)가 규정되었다.

한-EU FTA 제10.58조 압수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 의심 상품, 위법혐의행위 수행에 주로 사용된 관련 재료 및 도구, 위법혐의행위에 관련된 서류증거, 그리고 침해행위에 기인하거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 10.59조 벌칙

제10.54조에 언급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적인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 선고를 포함한 벌칙을 규정한다.

III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OSP를 ① 단순도관, ② 캐싱 및 ③ 호스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면책규정을 적용하였다(제10.63조, 제10.64조, 제10.65조).¹⁴⁾

한-EU FTA 제10.62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양 당사자는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0.63조부터 제10.66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10.63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 가.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
 - 나.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다.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제공 행위는, 저장이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아니하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4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캐싱”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 가.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할 것
 - 나.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¹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이를 ①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개적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단순도관, ② 자동적인 처리를 통한 캐싱서비스, ③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및 ④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다. 제공자가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라.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업계에 의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마.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65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또는
 나.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자의 법적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가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OSP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서비스이용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를 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제10.66조 제2항).

한-EU FTA 제10.66조 감시할 일반적 의무의 면제

1. 양 당사자는, 제공자가 제10.63조부터 제10.65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양 당사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해 행해진 불법행위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려줄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 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의무를 수립할 수 있다.

IV 국경조치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상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적 표시·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하였다(제10.67조). 다만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고려, 협정 발효 후 2년간 시행 유예되었다(제10.67조 제4항). 적용에 있어서도 환적의 경우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조치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한-EU FTA 제10.67조 국경조치

1. 각 당사자는, 이 절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 수출, 재수출, 보세운송,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 임시 절차 또는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 권리자가 세관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2. 양 당사자는 세관당국이, 자신의 조치과정에서 그리고 권리자에 의해 신청이 제출되거나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 권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제4절을 이행하면서 확립된 수입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 또는 의무는 수출업자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상품의 보유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4. 대한민국은 각주24의 다호1)목 및 다호3)목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상의 의무를 협정 발효 2년 내에 완전히 이행한다.



제4장 한-중 FTA에서 주요 지식재산 이슈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주요 이슈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제4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제5절 식물신품종 보호

제6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한-중 FTA는 제15장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일반규정(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제2절), 상표(제3절), 특허 및 실용신안(제4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제5절), 식물품종 보호(제6절), 미공개 정보(제7절), 산업디자인(제8절),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제9절), 지식재산권의 집행(제10절) 및 그 밖의 규정(제11절)의 총 11개의 절로 구성된다.

동 협정을 통하여 양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국제규범 준수에 동의하였으며, 자국법에 따른 동 협정보다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동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케 하였다(제15.4조).

▶▶ 제1절

저작권 분야 주요 이슈

I // 배타적 복제권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등의 저작인접권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신호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제15.6조 제2항).

한-중 FTA 제15.6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방식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II // 방송신호의 보호

방송신호의 보호기간을 방송 시점으로부터 최소 50년 동안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6조 제3항).¹⁵⁾ 이때 보호되는 방송 신호는 유선,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을 통해 방송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한-중 FTA 제15.6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기간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이 방송이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이 이루어진 후 5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III // 보상청구권의 행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한 직·간접적 이용에 대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제15.7조 제1항).

한-중 FTA 제15.7조 방송 및 공중전달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¹⁵⁾ 종래 중국은 자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 반면, 외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은 TRIPs 협정에 따라 20년의 보호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 FTA상 동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 방송사업자도 중국방송사업자와 동일한 5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받게 되었다.

IV //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신호의 재방송, 복제 및 고정과 관련한 사전허락 및 사후금지권을 부여하였다(제15.7조 제2항). 이때 재방송은 방송사에서 송출한 신호를 동시에 다른 매체로 송출하는 행위로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에 해당되며, 고정은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및 녹화한 방송을 배포·송신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중 FTA 제15.7조 방송 및 공중전달

2.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V //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우회 금지

저작물, 실연, 음반의 이용 통제 및 접근 통제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가 금지되었다(제15.8조). 이에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이용 행위 및 권리자가 허락한 경우에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의 해제 등이 금지되었다.

한-중 FTA 제15.8조 기술조치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2. 이 장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네트워크에서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에서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접근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법규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든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규와 제15.3조에 언급된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VI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의 금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혹은 변경 행위,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저작물·실연·음반 등을 일반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토록 규정되었다(제 15.9조).

한-중 FTA 제15.9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장 또는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권리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가.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나.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권한 없이 저작물, 저작물의 복제물, 실연,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2.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나 그 밖의 어떠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3. 제2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주요 이슈

I 특허 대상 제외 범위

인간 동 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 및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절차 및 미생물적인 절차 등은 특허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제15.15조 제3항 및 제4항).

한-중 FTA 제15.15조 특허 보호

1.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는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2. 각 당사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 나.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이거나 미생물학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4.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I //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노력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하여 심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로 협의하였다(제15.15조 제5항).

한-중 FTA 제15.15조 특허 보호

5. 각 당사국은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III // 실용신안제도 남용 방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당사국에서는 법원이 실용신안 권리자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여 실용신안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였다(제15.16조 제2항).

한-중 FTA 제15.16조 실용신안

1. 양 당사국이 실용신안제도를 설립했음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권리자와 대중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제고하고 권리자와 대중 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실용신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양 당사국의 실용신안의 법적 체계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한다.
2. 실용신안 침해에 대한 모든 분쟁에 있어, 당사국이 실질적 심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실용신안 침해 심사의 증거로서 권한 있는 당국이 선행기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원고가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절

상표 분야 주요 이슈

I // 소리 상표의 보호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리만으로 구성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하였다(제15.11조 제2항).

한-중 FTA 제15.11조 상표 보호

2.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II // 상표권자의 권리강화

상표등록권자는 제3자가 ① 등록 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②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③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④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⑤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등록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등록 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15.11조 제3항).

한-중 FTA 제15.11조 상표 보호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아니한다.

또한 유명 등록 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도 유명 상표 보호 적용하되, 유명 상표 여부의 판단에 있어 ① 상표 등록 ②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 ③ 유명 상표로의 사전 인식을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제15.13조).

한-중 FTA 제15.13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조에 따른 보호는 등록 상표가 각 당사국에서 유명하고, 그 유명 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그 등록 상표권자와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그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국한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그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이에 ①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② 해당 유명 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여, ③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 취소 및 사용이 금지된다.¹⁶⁾

¹⁶⁾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II 상표출원 절차의 개선

상표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의 서면 통보, 출원인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이해관계자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여 합리적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보장하였다(제15.14조 제1항). 또한, 상표 출원, 심사, 등록 및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일반 대중이 상표출원과 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무화하였다(제15.14조 제2항).

한-중 FTA 제15.14조 상표의 등록 및 출원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상표의 전자적 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 제4절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기여를 인정하고, 향후 국제규범 및 자국법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협력과 논의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5.17조).

한-중 FTA 제15.17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1. 양 당사국은 과학, 문화 및 경제 발전에 대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기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1992년 6월 5일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에서 창설된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요건, 특히 사전통지 합의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요건을 존중한다.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하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협약 간의 상호 지지적 관계를 제고하는 노력을 장려한다.
3. 각 당사국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 및 국내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증진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4. 다자 협정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규의 향후 발전에 따라,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관한 관련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특허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협약의 목적을 지지하며 그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점에 관하여 협력한다.

》》 제5절

식물신품종 보호

당사국에게 상대국의 식물신품종 보호 법규를 존중하고 종묘업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18조). 이에 식물신품종과 관련하여 상업적 목적의 종자 생산·증식,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수출 및 수입 등에 대해서는 종묘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되었다.

한-중 FTA 제15.18조 식물품종 보호

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을 존중하며 식물신품종의 육종가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2. 양 당사국은 식물신품종 시험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험에 관한 협력을 제고할 것이다.
3. 보호되는 품종의 번식재료와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육종가의 허락이 요구된다.
 - 가. 상업적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또는 재생산(증식)
 - 나. 상업적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
 - 다. 판매를 위한 제공
 - 라. 판매 또는 그 밖의 마케팅, 그리고
 - 마. 수입 또는 수출

제6절

절차법 분야 주요 이슈

I 저작권·저작인접권 권리자 추정

민사, 형사, 행정 절차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5.23조).

한-중 FTA 제15.23조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II 손해배상제도의 개정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실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5.24조 제2항 가호). 또한,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및 권리자가 제시하는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 방식에 의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15.24조 제2항 나호).

한-중 FTA 제15.24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 2)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호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법 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 측정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상표 위조 및 저작권·저작인접권(음반, 실연)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24조 제3항).

한-중 FTA 제15.24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3.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 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III 침해물품 등의 압류 및 폐기

침해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도구,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 및 침해로부터 발생한 자산에 대한 압류 권한을 규정하였다. 이에 사법당국에게 상표위조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품,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 권한이 부여되었다(15.24조 제5항 및 제6항, 제15.26조 제5항 및 제15.27조 제3항 다호).

한-중 FTA 제15.24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5.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및 그 지배적인 용도가 침해 물품의 생성에 있었던 재료 및 도구,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적절한 상황에서 폐기된다.
 - 나. 그 사법 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지배적으로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 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제15.26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제15.27조 형사절차와 구제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 나. 그 사법 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 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다. 그 사법 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또는 폐기, 그리고
 -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IV 법원의 명령 권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소유·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 15.24조 제7항). 아울러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가 재판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다(제15.24조 제8항).

한-중 FTA 제15.24조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그 사법 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침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사법 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 영업비밀을 저해함이 없이, 그러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8.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그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V // 잠정조치

집행당국이 일방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기관에 부여하였다(제15.25조).

한-중 FTA 제15.25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그 사법 당국이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권한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그 사법 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피고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VI // 침해물품 통관보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수입, 수출 또는 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대 및 보세창고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신청할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권리자가 충분한 정보를 관세당국에 제공할 경우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이 사전에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세관이 침해물품을 적발했을 때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였다(제15.26조 제1항부터 제3항).

한-중 FTA 제15.26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국내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¹¹의 수입, 수출, 환적, 자유지역에의 장치 및 보세창고에의 장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관세당국이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것을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 법규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수입, 수출, 환적 및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는 보세지역으로의 장치와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의심되는 침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 침해 의심 물품의 식별 방법과 같은 충분한 정보의 제시와 함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한다. 관세당국은 그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그러한 보호 요청 권리와 관련 있는 침해 의심 상품을 발견한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름, 수입자의 주소, 제품 기술서, 수량 및 신고 가격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권리자에게 알리고,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담보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권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세관이 직권으로 침해물품의 통관보류할 수 있게 하고(제15.26조 제4항),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불법부착 상표의 단순제거만으로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상거래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15.26조 제5항).

한-중 FTA 제15.26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사인(私人)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청구 없이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VII // 영화도촬 제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상업적 규모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였다(제15.27조 제2항).

한-중 FTA 제15.27조 형사절차와 구제

2.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받지 아니하고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VIII // 범죄수익의 압수 및 몰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였다(제15.27조 제3항).

한-중 FTA 제15.27조 형사절차와 구제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 나. 그 사법 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
 - 다. 그 사법 당국은 다음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몰수 또는 폐기, 그리고
 -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IX //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인터넷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였다(제15.28조).

한-중 FTA 제15.28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제5장 기타 FTA

제1절 협력증진 등 일반규정 위주의 FTA

제2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FTA

KIP

KIP

▶▶ 제1절

협력증진 등 일반규정 위주의 FTA

I // 한-싱가포르 FTA

1. 일반

한-싱가포르 FTA는 TRIPs 협정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호국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함을 규정하였다(제17.2조). 또한, TRIPs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양국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4조).

한-싱가포르 FTA 제17.2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문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17.4조 보호의 강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 또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협력증진 등

한편 양국은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제17.5조), 상대국의 지식재산정책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교육훈련과 워크숍,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제17.8조).

한-싱가포르 FTA 제 17.5 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국제특허절차의 편의증진,
- 나. 각 당사국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활동 및 경험에 대한 상호 이해의 증진,
- 다. 특허 기술·라이선싱 및 시장 정보,
- 라.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그리고
- 마.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기술적 전문지식 및 지식의 교류

제17.8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적재산 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분야에서 교육·워크샵 및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가 출원된 경우 싱가포르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예비심사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을 지정하고 특허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제17.6조). 아울러 한국에서의 특허출원과 동일한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특허청을 싱가포르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7.7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실제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싱가포르 FTA 제17.6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1.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영어로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한다.
2.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은 이 협정 서명 후 3월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을 제1항에 언급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관하여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7.7조 특허절차의 촉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서의 특허출원과 일치하는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 특허절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 지정 특허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은 싱가포르 특허청에 대하여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에 관한 정보·서류 및 번역문을 제출한다.

또한, 당사국 협력에 대한 검토, 평가, 권고 및 새로운 협력 분야의 발굴 등을 위해 “지식재산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였다(제17.9조).

한-싱가포르 FTA 제17.9조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1. 이 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

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 나.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의 제공
 - 다.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 분야의 검토 및 권고, 그리고
 - 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2.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2.1조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하는 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II 한-ASEAN FTA

한-ASEAN FTA는 당사국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을 증진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0조 제1항). 이에 지적재산의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경험의 공유, 지식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인력에 관한 정보의 교환, 경험의 공유 및 훈련의 장려, 각 당사국의 가입을 조건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 조사 및 국제 예비조사의 수행,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특허 및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의 향상 및 현대화 촉진의 지원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의 강화 등을 규정하며, 이에 더한 협력 증진을 가능케 규정하였다(제10조 제2항).

III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양국의 TRIPs 협정에 따라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호국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함을 규정하였다(제12.2조).¹⁷⁾ 또한, 한-인도 CEPA와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TRIPs 협정보다 광범위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12.3조). 아울러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12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동 CEPA 제14장의 분쟁해결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제12.6조).

¹⁷⁾ CEPA와 FTA의 실질적 동일성에 관해서는 본고의 각주1 참조.

▶▶ 제2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FTA

I // 한-칠레 FTA

1. 일반

한-칠레 FTA를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의 제공을 약속하였다(제16.1조). 한편 TRI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법을 통해 동 협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인정하였다(제16.2조).

한-칠레 FTA 제16.1조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국민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협정의 일부인 무역 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16.2조 더 광범위한 보호

당사국은 국내법으로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지리적 표시의 보호

한편 양국은 지리적 표시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등록 및/또는 보호되고 있고, TRIPs 협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된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제16.4조).¹⁸⁾

한-칠레 FTA 제16.4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주어진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상품이 각 당사국의 영역, 그 영역 내의 일정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2.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기술된 보호의 범위 내에 속하고 타방 당사국에 의해 등록되고 보호되는 타방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각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러한 의무의 수락에 더하여 어느 당사국도 당해 상품이 타방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수입 및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칠레는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부속사 16.43에 나열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칠레는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지닌 상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이외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4. 한국은 칠레가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부속서 16.4.4에 나열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한국은 칠레의 관련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지닌 상품이 칠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한, 이외, 수입,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이 “피스코”에 관해 칠레뿐만 아니라 페루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추가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하에 부속서 16.4.5에 나열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의 보호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추가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인정한다.

¹⁸⁾ 이에 한국은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에, 칠레는 피스코 등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부속서 16.4.4).

II // 한-E FTA FTA

1. 일반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로, 한-EFTA FTA는 최초의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FTA다. 이에 당사국들은 TRIPs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함을 규정하였다(제7.1조). 또한, TRIPs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국들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1조 2항). 아울러 당사국들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상대국의 지식재산정책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인적 교류, 교육훈련의 증진 등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제7.3조).

한-EFTA FTA 제7.1조 지식재산의 보호

1. 당사국들은 이 조 부속서 XIII과 부속서 XIII에서 규정된 국제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의 제3조 및 제5조의 실제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지적재산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제7.3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1. 당사국들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증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국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3국과 당사국들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조화·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확인되었거나 또는 미래의 국제협약에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가. 심사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 인력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나.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야
 - 다.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정책·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 라. 지적재산 및 발명인식에 관한 교육의 증진

2. 특허

한편 특허와 관련하여 노르웨이를 제외한 당사자국들은 TRIPs 협정 규정상 특허 예외사항으로 ①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진 그러한 방법 또는 ② 식물 또는 동물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조법의 두 사항을 추가하였다(부속서 XIII 제2조).¹⁹⁾ 또한,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에 대해서 판매 허가절차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효과적인 특허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최장 5년까지의 보상적 보호기간을 부여하고(부속서 XIII 제2조 나목),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인정하였다(부속서 XIII 제2조 다목).

한-EFTA FTA 제2조 특허

당사국들은 자국 국내법에서 최소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기술의 전 분야에서의 발명을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특허보호 다만,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 대하여 이는 TRIPs 제27조 제1항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TRIPs 협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것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하여진 그러한 방법. 이 규정은 그러한 방법 중 어느 것의 사용을 위한 제품 특별히 물질 또는 구성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2) 식물 또는 동물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제법 또는 이에 의한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물 변종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제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보호된다.

노르웨이에 대하여 이는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1992년 5월 2일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 나. 판매 허가 절차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효과적인 특허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최장 5년까지의 기간동안 의약품 및 식물 보호기간 그리고
- 다. 협정의 조건과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2001년 11월 14일 도하 각료 회의에서 채택)에 합치하는 강제실시권의 부여

¹⁹⁾ 노르웨이는 자국법의 기준에 따른다.

아울러 의약품 또는 농·화학제품의 판매나 허가를 위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금지하여 미공개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였다(부속서 XIII 제3조). 산업디자인은 최소 15년의 보호기간을 보장하며, 상품 수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의 디자인은 더 짧은 보호기간을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부속서 XIII 제4조).

한-EFTA FTA 제3조 미공개 정보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제39조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보호한다. 원개발제품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의 판매허가를 위한 신청자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의 판매허가를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최초 신청자에 의하여 제출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미공개 시험 또는 그 밖의 미공개자료에, 허가일로부터 적절한 연수(年數) 동안 원용하는 것을 자국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

3. 지리적 표시의 보호

원산지 명칭을 포함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국내법상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였다(부속서 XIII 제5조). 이를 위해 노르웨이를 제외한 우리나라와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및 아이슬란드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의 채택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제5조).

한-EFTA FTA 제5조 지리적 표시

1. 당사국들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다.
2.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하거나 달리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는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의 채택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III 한-페루 FTA

1. 일반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및 WIPO가 관장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협정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제17.3조), 동 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광범위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양국 각각의 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17.3조). 또한, 상호의 과학, 기술 및 혁신의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의견과 정보의 공유, 교육프로젝트, 국제특허절차의 추진, 특허기술 라이선싱 등의 협력체계를 도모하기로 하였다(제17.10조).

2. 저작권

저작권 보호의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제17.7조 제2항).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의 송신으로부터 50년으로 만료되며(제17.7조 제4항), 인터넷에서의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는다(제17.7조 제5항).

한-페루 FTA 제17.7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 1)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 2)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송신부터 50년 이후에 만료한다.
5. 어느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재송신²⁾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를 위해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이를 위한 상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다(제17.6조).

한-페루 FTA 제17.6조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

1.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3절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를 제공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이 조는 각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부속서 17가 제1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페루의 지리적 표시이다.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3. 부속서 17가 제2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이다. 페루의 국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페루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조건으로, 그리고 상호 동의에 의해,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4.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양국은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위해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건전한 환경적 사용을 위한 접근촉진 등의 법적 여건 조성 노력을 규정하였다(제17.5조 제2항). 또한, 자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하에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7.5조 제3항). 또한, 국내 법령의 추후 진전을 조건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제17.5조 제6항).

한-페루 FTA 제17.5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자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하에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제고를 통해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 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WIPO 정부 간 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협의체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6. 다자 협정 또는 양국 각각의 국내 법령의 추후 진전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5. 국경조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통관의 보류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제17.9조). 이에 유사 상표 사용상품 및 저작권 침해 복제물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제17.9조 제1항, 제2항). 아울러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의심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 물품에 대해서 사인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7.9조 제4항).

한-페루 FTA 제17.9조 국경조치에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관세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의 반출을 정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권리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른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관세당국에 제공하도록, 그리고 관세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보를 제공할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은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3.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당사국은 탁송인, 수입업자,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권한 있는 당국에 부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 물품에 대해서 사인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의심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IV // 한-터키 FTA

1. 일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제2장에 규정되며, 이를 통해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TRIPs 협정 등의 국제규범에 의한 의무와 이행 등에 동의하였다(제2.1조). 또한,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을 규정하고, 공동위원회를 통한 이행의 감시 및 계속적 검토와 협의를 규정하였다(제2.6조).

2. 저작권

양국은 로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의 준수를 확인하고 (제2.2조 제1항),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응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제2.2조 제2항). 또한, 권리관리 정보에 대해서도 제거, 변경 및 제거 또는 변경이 가해진 저작물의 배포 등을 규제하였다(제2.2조 제3항).

한-터키 FTA 제2.2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61)(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항
- 나.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항
-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항, 그리고
-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항

기술조치의 보호

2. 각 당사국은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의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들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3. 각 당사국은 인이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나. 권한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5. 제4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상표

상표에 증명표장과 보증표장을 포함하고(제2.3조 제1항),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제2.3조 제2항). 또한, 파리협약에 더하여 등록, 유명표장 목록에의 등재 및 사전인식 등을 이유로 유명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제2.3조 제4항).

한-터키 FTA 제2.3조 상표

1.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 또는 보증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양 당사국은 유명 표장의 보호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의무를 재확인한다. 이에 추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명 표장 보호를 위해,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가. 등록
 -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4. 지리적 표시의 보호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양국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를 규정하였다(제2.4조).

한-터키 FTA 제2.4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제3절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2. 부속서 2의 터키측 목록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 터키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이다. 한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한국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될 것이다.
3. 부속서 2의 한국측 목록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의 의미에서, 한국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이다. 터키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터키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될 것이다.
4. 양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의 발효 후,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양 당사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참고로 부속서2에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경우 터키의 지리적 표시는 Hereke carpet, Búnyun carpet이며, 한국은 고려홍삼 및 고려백삼이 지리적 표시로 등재되어 있다.

V // 한-호주 FTA

1. 일반

동 협약을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및 TRIPs 협정 등의 국제규범의 준수에 동의하고,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더욱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함을 규정하였다(제13.1조). 한편 이행 및 협력(제13.3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매년 회합하여 양국 간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협력할 것에 동의하였다(제13.12조).

2. 저작권

양국은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규정하였다(제13.5조, 제13.6조 및 제13.7조).

한-호주 FTA 제13.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그의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있어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4.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 또는 방송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저작물·실연·음반 및 방송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제13.6조 저작권

베른협약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제13.7조

저작권

1. 이 장에서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 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 나. 방송사업자에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의 본사가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해 있거나 방송이 다른 쪽 당사국에 위치하는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경우 그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실연자의 권리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3. 각 당사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실연자에 대하여, 실연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의 허가에 의하거나 이에 따른 배포 이후에도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을 공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 그리고
 - 나. 실연자에 대해서는 음반에 고정된 그들의 실연이, 또는 음반제작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음반이,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이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5.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 다. 고정물의 복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이상 또는 발행과 창작 이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제13.5조 제5항), 방송은 50년 이상으로 규정하였다(제13.5조 제6항).

한-호주 FTA 제13.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5.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한편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인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제13.5조 제9항 가목),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과 기술조치의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및 기술조치의 우회를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등이 된 장치, 상품 또는 부품의 제조, 수입, 배포, 공중제외, 제공, 밀거래 등(제13.5조 제9항 나목)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규정하였다(제13.5조 제9항).

한-호주 FTA 제13.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9.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관련인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 나. 다음의 장치·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공중에게 제외, 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외하거나 제공하는 것
 - 1)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 2)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3) 모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또한,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저작물의 복사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효과와 구제방안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3.5조 제10항).

한-호주 FTA 제13.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0. 각 당사국은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저작물의 복사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되(제13.5조 제13항), 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 텔레비전 신호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13.5조 제14항).

한-호주 FTA 제13.5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3. 이 조와 제13.6조 및 제13.7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와, 신호 그 자체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특허

양국은 ①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② 환경 보전, ③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이나, ④ 인간 및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치료 방법 등인 경우를 특허대상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하였다(제13.8조 제2항). 또한 공지 예외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하여 특허권자의 보호기반을 확대하였다(제13.8조 제5항).

한-호주 FTA 제13.8조 특허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만을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5.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 나. 공지가 출원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4. 상표

상표보호의 범위를 시각적인 것으로만 제한할 수 없으며 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하되(제13.2조), 도표로 표현될 수 있는 충분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제13.2조 제1항 각주 60). 또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상표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제13.2조 제2항).

한-호주 FTA 제13.2조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

* 당사국은 도표로 표현될 수 있는 상표의 충분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유명 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간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면 유명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고, 혼동을 초래하는 동일 및 유사한 상표에 대한 등록의 거절, 취소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였다(제13.2조 제5항 및 제6항).

한-호주 FTA 제13.2조 상표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6.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체결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61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5. 집행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된 행정 및 사법적 결정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결정의 근거 등이 명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3.9조).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하되, 권리침해자에 대해서는 권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제13.9조 제5항),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수수료 및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3.9조 제7항).

한-호주 FTA 제13.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5.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가호1목

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국의 사법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 특허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 위조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허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사법당국에게는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나 도구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제13.9조 제8항), 또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명령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하는 원칙 및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13.9조 제9항).

한-호주 FTA 제13.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
-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그러한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 다. 위조된 상표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이외 민사 분쟁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인정(제13.9조 제15항)하고,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를 제공하는 한편(제13.9조 제28항), OSP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였다(제13.9조 제29항).

한-호주 FTA 제13.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15.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28.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제공한다.
29.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1조에 따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지하는 데 있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소유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

VI // 한-캐나다 FTA

1. 일반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TRIPs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보호를 가능케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제16.4조). 아울러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감독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6.18조).

한-캐나다 FTA 제16.18조 지식재산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각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다.
3.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된 주제와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 나. 제16.19조에 따른 협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그리고
 - 다.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을 감독한다.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2. 저작권

양국은 로마협약,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 조약(WPPT)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다(제16.11조 제1항). 또한, 방송이나 공중 전달을 위하여 음반이 사용된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제16.11조 제3항). 또한,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였다(제16.11조 제4항 및 제5항). 다만, 이는 소비자 전자, 통신 또는 컴퓨터 제품이 이행 당사국의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제16.11조 제6항). 한편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제16.11조 제8항),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는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수신 또는 재배포 및 복호화에 주로 도움이 되는 기기의 제조·판매 등을 위법행위로 규정하였다(제16.11조 제10항).

한-캐나다 FTA 제16.11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 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 협약”이라 한다)
 - 나.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채택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 다.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이하 “WCT”라 한다), 그리고
 - 라. WPPT
3. 각 당사국은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 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 가. 자국법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 1)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해진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우회하는 것, 그리고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장치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공중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 나. 다음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치나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배포, 또는 서비스의 제공
 - 1)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 2)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만 있는 것
6.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소비자 전자, 통신 또는 컴퓨터제품이 이 항들을 이행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법에 상호운용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즉,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장치, 제품, 구성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응하도록 설계할 의무는 없다.
7. 제4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4항 및 제5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8.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방조, 조장 또는 은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의 행위를 권한 없이 고의로 행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9. 제8항에 따라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함에 있어, 당사국은 제8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제한 또는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8항에 규정된 의무는 당사국의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제한, 예외 또는 항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민사 또는 형사 범죄로 한다.

- 가.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수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 나.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상업적 활동과 관련하여 수신 또는 재배포하는 것

각 당사국은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구성된 민사 위법에 대하여 그 신호의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인이 소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특허

양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특허가 가능하도록 인정하였다(제16.12조 제1항). 한편 ①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및 치료 등, ②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제법 등은 특허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다(제16.12조 제2항).

한-캐나다 FTA 제16.12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그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만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중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위는 그 이용이 자국의 국내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 다.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4. 상표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하고, 등록 요건으로 시각적 인식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16.9조 제1항). 아울러 증명표장제도를 통해 상품·서비스가 일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단체표장제도를 통해 동종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아래에 있는 단체 구성원 등에게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제16.9조 제2항).

한-캐나다 FTA 제16.9조 상표

1. 당사국은 등록의 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증명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

유명 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간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면 유명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였다(제16.9조 제5항). 특히,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어 혼동 및 기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의 등록 취소 및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규정되었다(제16.9조 제6항).

한-캐나다 FTA 제16.9조 상표

6.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1967)(이하 “파리 협약”이라 한다)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고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5.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지리적 표시로서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거나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금지하였다(제16.10조).

한-캐나다 FTA 제16.10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캐나다는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그리고 “이천쌀”과 그 각각의 번역어인 “Korean Red Ginseng”, “Korean White Ginseng”, “Korean Fresh Ginseng”, “Icheon Rice”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해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을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 나. 그 관련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인삼 또는 쌀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2. 한국은 “캐나다 위스키”, 그리고 “캐나다 라이 위스키”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예방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 나. 그 증류주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거나, 또는 선의로 사용되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에서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집행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집행 절차를 법률에 따라서 보장하고(제16.13조), 민사절차에서 저작권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을 그 성명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된 자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제작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6.13조 제5항). 또한, 지식재산권의 집행 관련 사법절차를 권리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6.13조 제6항), 지식재산권에 관련 사법절차에서 고의 등으로 침해를 한 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고(제16.13조 제10항), 사법절차에

서 저작권 등의 침해 상품 및 침해 상품 제조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에 대한 폐기를 사법당국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13조 제16항). 아울러 사법당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6.13조 제20항).

한-캐나다 FTA 제16.13조 지식재산권 집행

5.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점에 관련되는 민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제작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지명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10.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상실된 이익 또는 시장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정당한 가치 측정 방법을 고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다.
11.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점 침해, 그리고 상표 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이익을 제10항에서 언급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최소한 저작물·음반 및 실연을 보호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점 침해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 위조의 경우,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규정하는 제도를 수립 또는 유지한다.
 - 가. 법정손해배상액
 - 나. 침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 또는
 - 다. 적어도 저작권의 경우, 추가적 손해배상
18. 면책 특권, 정보원에 대한 기밀보호 또는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침해자 또는, 그 대안으로서 침해혐의자에게 최소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자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규정된, 침해자 또는 침해 혐의자가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정보는 침해 또는 침해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및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 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 또는 침해혐의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침해 또는 침해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가. 당사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의 방지, 그리고
 - 나. 침해의 혐의에 관한 관련 증거의 보존

7. 기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마련하여, OSP에게 저작권 등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제16.16조). 다만 침해 감소 조치는 전자상거래 등 합법적 행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한다(제16.16조 제5항).

한-캐나다 FTA 제16.16조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특별조치

1. 이 장에 규정된 범위의 각 당사국의 민·형사 집행 절차는 침해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수단의 불법적인 사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적용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리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주장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정보가 해당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할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가입자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되게,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업계 내 상호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이러한 절차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당한 행위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하면서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및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 원칙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행한다.

VII // 한-뉴질랜드 FTA

1. 일반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TRIPs 협정이 규정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에 인식을 같이하고(제11.1조 및 제11.2조), 그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규정하였다(제11.3조). 아울러 양국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접촉선의 지정(제11.7조), 정보의 교환(제11.8조) 및 협력(제11.9조)을 규정하였다.

2. 저작권

양국은 저작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저작물·음반 및 방송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규정하였다(제11.5조). 다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에 어긋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저작자 등의 권리에 대하여 제한 또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제11.5조 제4항). 아울러 저작물 등의 식별을 위한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였으며(제11.5조 제5항),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전송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제11.5조 제7항).

한-뉴질랜드 FTA 제11.5조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4.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권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해당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7. 각 당사국은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가.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 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이 장에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3. 상표

냄새 또는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하되(제11.4조 제1항),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제11.4조 각주*). 한편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였으며(제11.4조 제2항), 유명 상표의 보호 요건으로 상표권 등록, 유명 상표 목록 등재, 유명 상표 사전 인식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11.4조 제5항). 또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를 유명 상표와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 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였다(제11.4조 제7항).

한-뉴질랜드 FTA 제11.4조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상표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단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도 아니한다.*

* 당사국은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표의 충분한 묘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적어도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상표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를 유명 상표와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 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4.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각 당사국의 국제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제11.10조).

한-뉴질랜드 FTA 제11.10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각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또는 민간전승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다.

5. 집행

지식재산권의 모든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조치를 위해 당사국의 법에 따른 조치, 절차, 구제를 보장하였다(제11.6조 제1항). 또한, 인터넷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1.6조 제2항).

한-뉴질랜드 FTA 제11.6조 집행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조치, 절차 및 구제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한다.

VIII 한-베트남 FTA

1. 일반

양국은 동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와 집행을 규정하고(제12.2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증진을 합의하였다(제12.10조). 또한, 관련 국제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였고 미가입 조약에 대한 상호 협정가입 및 이행지원의 가능성을 규정하였다(제12.3조). 아울러 TRIPs 협정보다 광범위한 보호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하였다(제12.4조).

2. 저작권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신호의 모든 방식 및 형태로의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다(제12.8조 제1항). 또한,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간접적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제12.8조 제2항). 아울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콘텐츠의 용이한 접근 및 전달과 로열티의 상호 전송을 위한 양국의 집중관리단체 사이의 협정 체결 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다(제12.8조 제3항 및 제4항).

한-베트남 FTA 제12.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방식과 형태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집중관리 단체들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우수한 관리 관행의 문맥에서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한편 기기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합법적인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기기·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출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제12.8조 제5항 가목) 및 합법적인 신호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위성 신호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신호를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제12.8조 제5항 나목)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적 조치를 규정하였다.

한-베트남 FTA 제12.8조 저작권과 저작권접권

5.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 조치를 제공한다.

- 가.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또는 재배포하는 행위

3. 특허

특허의 대상에서 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②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 ③ 미생물을 제외한 동물, 식물이나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방법을 제외하였다(제12.7조 제2항).

한-베트남 FTA 제12.7조 특허

2. 각 당사국은 특허 대상에서 다음을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 다.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적이고 미생물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방법

한편 특허 공지예외 요건을 완화하여, ① 출원인 본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공지, ②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제12.7조 제4항). 또한, ① 출원의 공개 이후에 출원인 외의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② 특허의 출원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제12.7조 제5항).

한-베트남 FTA 제12.7조 특허

4.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 가. 공지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5.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가. 출원의 공개 이후에 출원인 외의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 나.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위한 준비 중인 경우

4. 상표

상표의 대상으로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으로 구성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하였다(제12.5조 제1항). 한편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사용에 대한 상표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였다(제12.5조 제2항).

한-베트남 FTA 제12.5조 상표

1. 각 당사국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표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하지만,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명 상표의 판단 요건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배제하고(제12.5조 제4항),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유명 상표권자와 그 상품·서비스 간에 연관성을 나타내어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대상 유명 상표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거절, 취소 및 사용금지를 가능케 하였다(제12.5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한-베트남 FTA 제12.5조 상표

4.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준용된다. 다만,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 가.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표와 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 나. 그 상표의 사용이 오인을 초래하거나, 그 상표와 선행 유명 상표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만하는 경우, 또는
 - 다. 그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 상표의 명성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유명 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준용하도록 권장된다.

5.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한편 경쟁자의 시설, 상품 혹은 산업·상업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경쟁자의 시설, 상품 혹은 산업·상업 활동을 불신시키는 성격의 거짓 주장, 상품의 성격, 제조 과정, 특성, 목적 적합성 혹은 수량 등에 대해 대중을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혹은 주장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 취득 혹은 사용권을 보유하는 행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였다(제 12.6조).

한-베트남 FTA 제12.6조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그리고
 - 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목적과 같이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된 목적으로 각 당사국 내의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 취득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유 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적절한 구제책을 수립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자신의 사업 이익이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고 간주하는 어떤 사람도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중단 또는 금지, 그러한 행위를 구성하는 상품의 폐기,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의 제거, 또는 그러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집행

민사, 형사 및 행정 절차에 있어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12.9조 제2항). 또한, 저작권, 저작권접권, 특허권 및 상표 침해 민사소송의 종결 시에 패소자가 승소자의 법정 비용·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제12.9조 제4항).

한-베트남 FTA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2.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과 관련된 민사, 형사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국의 사법 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침해, 특허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 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저작권·저작권접권(음반, 실연) 침해 및 상표 위조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권리자가 구체적 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설정되게 하였다(제12.9조 제5항).

한-베트남 FTA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5.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 위조의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설정된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침해물품 및 침해행위와 관련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고, 상표 위조에 대해서는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도 규정하였다(제12.9조 제6항).

한-베트남 FTA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6.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 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나 법원의 관할권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이 재판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였다(제12.9조 제7항).

한-베트남 FTA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집행당국은 일방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기관에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피고인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9조 제9~10항).

한-베트남 FTA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9.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사법당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 절차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0.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

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했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였다(제12.9조 제12항). 또한,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불법 복제품 또는 상표 위조품으로 판정되어 몰수된 물품은 폐기되거나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하고, 제품에 부착된 위조 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위조 물품을 상거래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제12.9조 제13항).

한-베트남 FTA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12. 각 당사국은, 프라이버시 또는 비밀정보에 관한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유치 또는 압류한 경우, 지원을 요청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자가 구제를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상품의 물품 명세 및 수량, 탁송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국과 그 상품의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13.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 또는 위조로 몰수된 상품은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한편 인터넷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규정하였다(제12.9조 제15항).

한-베트남 FTA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15. 각 당사국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IX // 한-콜롬비아 FTA

1. 일반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의무의 준수를 확인하고(제15.2조),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하였다(제15.3조). 또한, 1981년 양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과학 및 기술 협력 협정’에 따른 협력사안과 활동을 고려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협력 등을 규정하였다(제15.10조). 한편 지식재산권 소진에 관해서는 개별국의 자유로운 제도수립을 인정하였다(제15.5조).

2. 저작권

양국은 로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 및 음반조약의 준수를 확인하고(제15.7조 제1항),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제15.7조 제2항),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효과적인 권리의 관리(제15.7조 제3항) 및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제15.7조 제4항)를 인정하였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규정하고(제15.7조 제5항),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것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의 제공을 마련하였다(제15.7조 제6항).

한-콜롬비아 FTA 제15.7조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2. 각 당사국은 자국법령에 따라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용에 대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집중관리단체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명성과 우수 관리 관행의 맥락에서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 다. 고정물의 복제, 그리고

라.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그 당사국의 법에 대한 사안이다.

5.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인이 행하는 자신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에 관하여 허락되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수행되는 것

권리관리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제거 또는 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제의 제공을 규정하였다(제15.7조 제9항). 아울러 유·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 그리고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구제의 제공도 규정하였다(제15.7조 제12항).

한-콜롬비아 FTA 제15.7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9.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인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가.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 없이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이 장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이 장에 언급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12.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 그리고
 -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3. 상표

상표등록요건으로 시각적 인식가능을 요구할 것을 금지하고, 소리 및 냄새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고(제15.6조 제1항),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상표에 포함시켰다(제15.6조 제2항). 유명 상표에 대해서는 유명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경우, 유명 상표의 등록, 등재 및 사전인식과 무관하게 구제절차를 제공하였다(제15.6조 제5항). 또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 오인, 기만 및 해당 상표와 유명 상표의 권리자와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 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을 거절, 취소 및 사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5.6조 제7항).

한-콜롬비아 FTA 제15.6조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조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가. 등록
 -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7.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 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4. 집행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된 자를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8조 제2항).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였다(제15.8조 제3항). 또한,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으로서 권한 있는 당국에 침해 관련 정보의 제공, 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5.9조).

한-콜롬비아 FTA 제15.8조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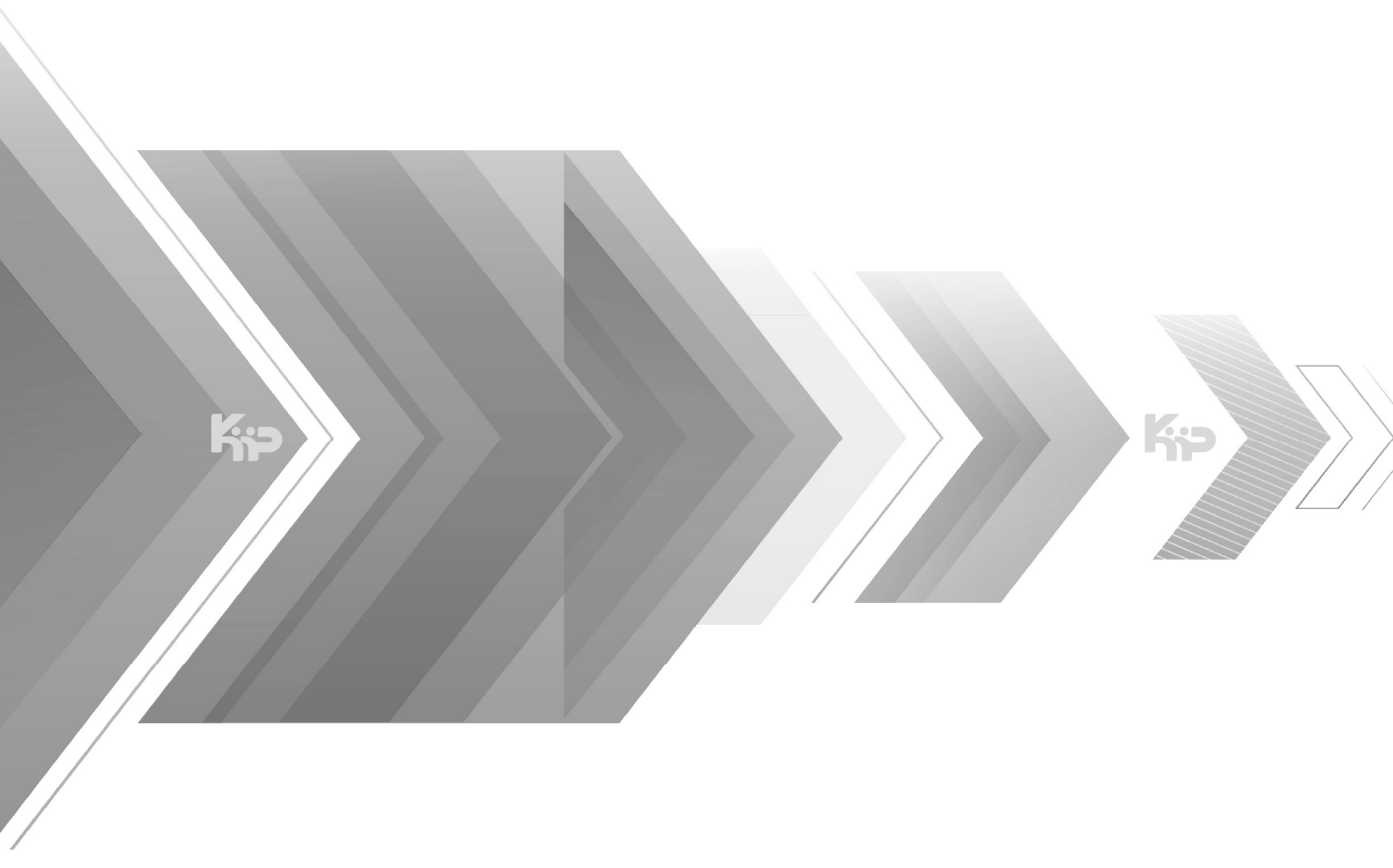
2.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15.9조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반출되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국은 탁송인, 수입업자 및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권한 있는 당국에 부여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중인 물품에 대해서 사인(私人)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제6장 마치며



FTA의 체결은 당사자 국가의 제도에 변화를 유발한다. 가령,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무역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대국으로, 한-미 FTA는 다른 FTA들에 비해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쟁점이 포함되었다. 이에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 연장, 의약품 등의 보호요건 및 절차 개정, 소리 및 냄새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파급력’은 우리나라에만 한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 다른 국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도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FTA 발효에 따른 자국법의 변화 및 국제규범의 준수 등에 따라 다른 FTA 상대국 및 경제블록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EU FTA 및 한-페루 FTA는 유예 및 발효 등에 있어 상호 연관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FTA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서는 별개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FTA의 체결 및 개정 등의 과정에서는 당사자 국가의 의견과 이익이 적극적으로 주장된다. 따라서 유사 동일한 분야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국가의 사정과 의도에 따라 내용과 규정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TRIPs협정 제23조는 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만 상품의 출처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EU FTA는 농식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농식품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에 따른 변화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 등에서 디지털 환경과 네트워크의 발달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복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나, OSP에 대한 면책 요건을 상세히 규정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 FTA 재협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규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로 미국은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은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의약품 및 IT 산업 등 일부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 또는 차이를 보이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미국 산업계의 개정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도 현재 다양한 국가 및 경제블록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들의 체결 및 발효에 따라 현재 한-EU FTA에 따른 경제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두고 유럽의회가 비판하는 등, 재협정의 의견이 일부 주장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 관련 쟁점에서도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대외협력 연구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 지재권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 행 인 권택민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 화 02-2189-2600
홈 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